

2021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

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하여 「2021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3월 12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. 사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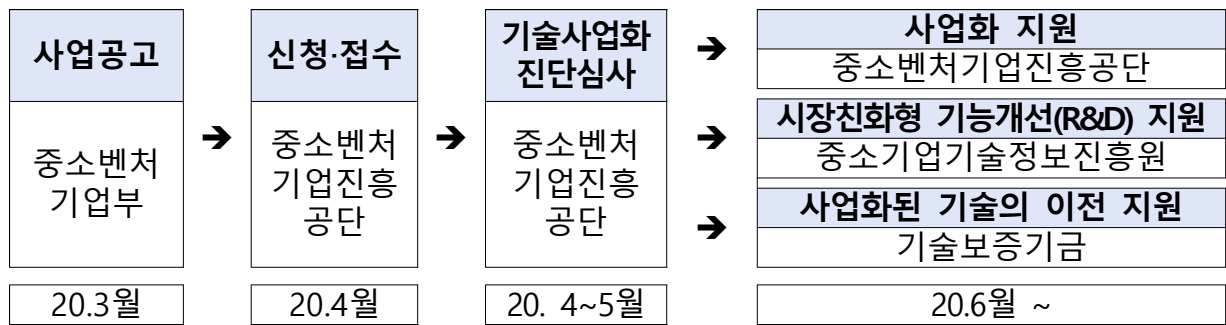
- 사업목적 :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망 기술을 발굴·보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도모
- 지원대상 : 사업화가 안 된* 정부 R&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
 - * 해당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, 양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
- 사업규모 : 총 4,350백만원

구 분	지원 수	최대 지원금액	정부지원 비율
사업화 진단심사	80개사 내외	-	-
사업화 지원	32개사	8,000만원	75%
시장친화형 기능개선(R&D) 지원	20개사	10,000만원	90%
기술이전 지원	사업화 진단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	-	-

*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

- 지원내용
 - (사업화 지원)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, 제품성능,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
 - (시장친화형 기능개선) 기술의 기능개선, 성능향상 등 R&D 지원
 - (기술이전) 기술거래 플랫폼(Tech-Bridge)에 등록하여 마케팅을 지원하고,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·보호 추진

□ 추진 절차



2. 신청자격 등

□ 신청자격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신청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

※ 단,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이 신청일 기준 양산,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

① 정부 R&D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

- *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에 정부지원 R&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
- * 정부지원 R&D 완료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

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(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)를 보유한 기업

- 사업화 권리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,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여야 함

□ 신청제외 대상

- 한국신용정보원의 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기업회생신청·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·폐업중인 기업
-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

3. 신청 기간 및 방법

□ (공고기간) 2021. 3. 12(금) ~ 2021. 4. 1(목) 18:00

□ (신청기간) 2021. 3. 17(수) ~ 2021. 4. 1(목) 18:00

□ (신청방법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<http://www.kosmes.or.kr>)홈페이지에서 신청

- 홈페이지 회원가입 → 지원사업 → 기타 →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→ 신청서 다운로드 → 작성한 신청서 및 기타서류 온라인으로 업로드*

*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(사업신청서, 기타서류)는 PDF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요망

* 신청·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

4. 제출서류

구분	내용
사업 신청서 (첨부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가진단표, 사업신청서 각 1부 - 사업화계획서 1부 (15매 이내) <p>⇒ 제출 파일명 : 업체명_사업신청서.pdf</p>
기타 서류 (첨부2~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1부(개인 ☞ 첨부2, 기업 ☞ 첨부2~3) -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1부(첨부4) - 대표자 신분증 사본*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, ex. 800111-1xxxxxx) -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* 각 1부(홈택스 발급자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2020년 표준재무제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2017~2019년 3개년 서류제출 * 창업 1년 미만 또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제외 - 정부 R&D 완료판정 공문 1부 또는 특허등록 원부*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특허청 키프리스 접속(www.kipris.or.kr) → 신청 기술 특허 검색 → 등록사항 → 특허등록원부 신청 및 출력 - 사업자등록증명원(홈택스 발급자료) - 국세납세증명서(개인/법인) 및 지방세납세증명서(개인/법인)(홈택스 발급자료) - 중소기업확인서 1부 <p>⇒ 제출 파일명 : 업체명_기타서류.pdf</p>

5. 세부 지원내용

① 사업화 지원

- **(대상)** 기술사업화 진단심사를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*으로 분류된 이후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

* 사업화유망기업(TC 유형) : 기술완성도(T), 사업화 역량(C)이 우수한 기업

- **(지원내용)**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지원한도 내에서 사업화 기획, 제품성능,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

<사업화 지원>

지원한도	정부지원금 비중	지원업체 수
최대 8,000만원	75% 이내	32개사

<사업화 지원 프로그램>

지원분야	지원 프로그램	지원내용
사업화 기획 (3개)	기술 컨설팅	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애로 해결 등을 위한 컨설팅
	경영 컨설팅	경영전략, 운영, 인사, 재무, 조직 등 컨설팅
	비즈니스 모델 개선	시장 규모·경쟁사 조사, 제품화·양산, 판로개척 등
제품 성능 (2개)	시제품 제작	아이디어 구현 및 제품 성능개선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(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린팅 설계 등 포함)
	성능 테스트	기술·제품의 성능인증, 검증, 평가 등 (고객 사양에 맞는 품질평가, 신뢰성 평가 등)
시장 마케팅 (3개)	시장조사	시장 시뮬레이션, 고객패널조사, 시장조사·분석 등 고객 검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시장조사
	마케팅 전략 수립	광고·유통·가격 전략, 고객관리, 매장구성전략 등 수립
	전시회 참가	국내·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홍보 및 시장(반응)조사

② 시장친화형 기능개선(R&D)

- **(대상)** 기술사업화 진단심사를 통해 기술강화 추진기업*으로 분류된 기업

* 기술강화추진기업(MC 유형) : 시장성(M), 사업화 역량(C)이 우수한 기업

* 진단심사 후 기술강화 추진기업에 R&D 접수 안내 예정(별도 공고 없음)

* 기술강화추진기업으로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2년 이내, 1회에 한하여 시장친화형 기능개선(R&D)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

- **(지원내용)**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능개선, 성능향상 등을 위한 R&D 지원

- 기술강화 추진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사업 안내 및 신청·접수, 평가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

<시장친화형 기능개선지원>

지원기간	지원한도	정부지원금 비중	지원업체 수
최대 1년	최대 1억원	90% 이내	20개사

* 코로나-19로 인한 중소기업 R&D 부담완화 정책(중기부 고시 제2020-104호, '20.12.21)으로 기업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20% → 10%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업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 중 1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
③ 기술이전

- (대상) 기술사업화 진단심사를 통해 사업화 기술보유기업*으로 분류된 기업
 - * 사업화 기술보유기업(TM 유형) : 기술 완성도(T), 시장성(M),이 우수한 기업
- (지원내용) 기술거래 플랫폼(Tech-Bridge)에 등록하여 마케팅을 지원하고,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·보호 추진
 - (기술 마케팅) 기술거래 플랫폼(Tech-Bridge)에 등록하여 마케팅을 지원
 - (기술신탁) 특허권을 위탁한 중소기업에 특허관리, 기술이전중개, 기술분쟁 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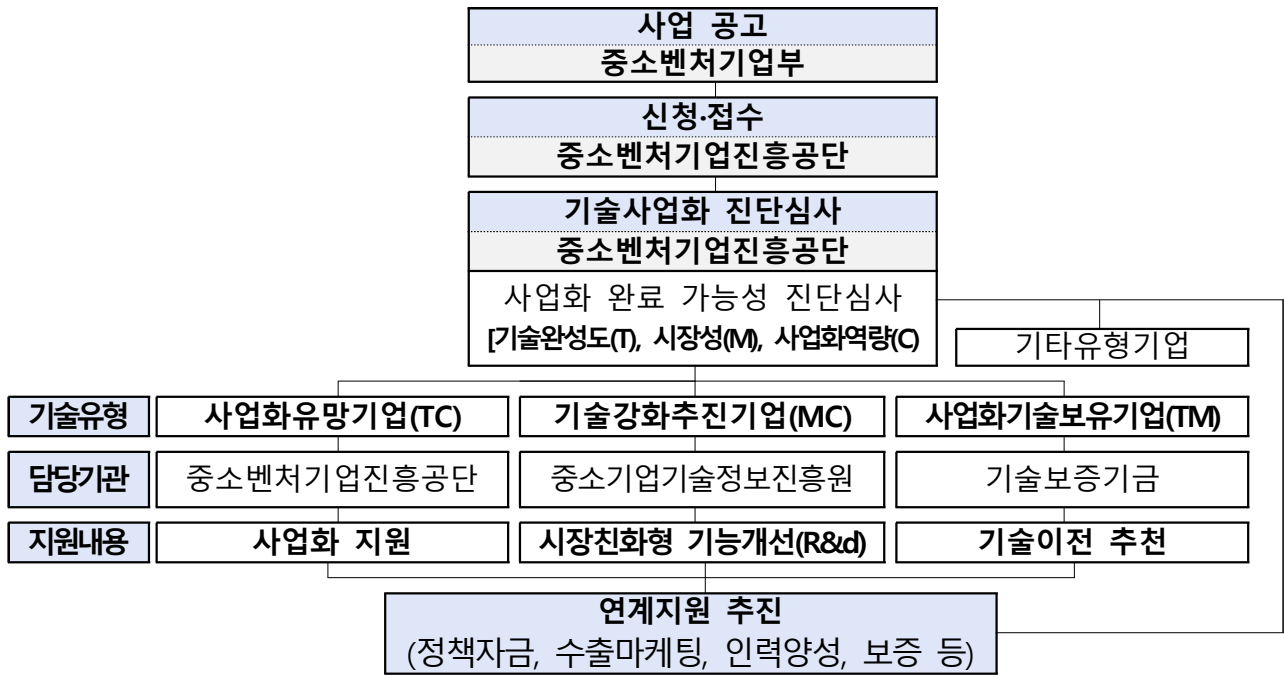
6. 추진 근거 및 체계
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
-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관련 행정규칙,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
-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(세부사업지침 포함)
-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

※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

□ 추진 체계



* T(Technology) : 기술완성도 , M(Marketability) : 시장성 , C(Capability) : 사업화역량

8. 문의처

□ 중소기업진흥공단 진단기술처 (☎ 055-751-9855)

□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(☎ 042-388-0324)